

범위요율 및 자유요율의 보험종목별 시행시기

(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 부칙제2조)

보 험 종 목	범 위 요 율 시 행 시 기	자 유 요 율 시 행 시 기
선박보험(500톤 미만), 운송보험, 도난보험, <u>기관기계보험</u> , <u>조립보험</u> , 건설공사보험, 배상책임보험,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, 근재보험, <u>동산 종합보험</u> , 기타 특종보험(상해보험 및 종합보험을 제외한 특종보험 전 체)	'94. 4. 1	<u>'96. 4. 1</u>
수출입적하보험, <u>일반화재보험</u> , 주택화재보험, 보증보험, 상해보험, 종합보험	'95. 4. 1	<u>'97. 4. 1</u>
장 기 손 해 보 험	예 정 사 업 비 율	'94. 4. 1
	예 정 위 험 률	-
	예 정 이 자 율	'98 이후

자동차보험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요율 및 자유요율의
이행시기는 다음과 같다.

자동차보험 요율산출요소	범 위 요 율 시 행 시 기	자 유 요 율 시 행 시 기
우량할인·불량할증을 및 특별 할증율	'94. 4. 1	2년간 범위요율을 실시한 후 자유요율을 시 행한다. 다만, 그간의 범위요율의 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자유요율 시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가입자특성요율(보험가입경력요 율,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)	'95. 8. 1	위와 같음
기본보험료	'96. 8. 1	위와 같음